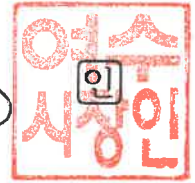


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12월 8 일

여 수 시 장 김기민



여수시 조례 제2273호

붙임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

##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여수시 문화의 날”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.

**제3조(기본계획 등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1. 여수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성별·연령·지역·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
2.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
3. 그 밖에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「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여수시 문화예술 중·단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③ 여수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,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.

④ 여수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·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

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**제4조(문화의 날 행사 등)** ① 시장은 여수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·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
2.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
3.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 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
4. 여수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
5.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수시 문화의 날 외에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주간 등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5조(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)**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여수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공연법」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
2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과 국립미술관
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4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

**제6조(사무위탁)** ① 시장은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문화의 날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

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7조(포상)** 시장은 여수시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, 단체 및 개인에게 「여수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